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 평정기준에 유죄판결 비율 등 포함〉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88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사·판사의 복무평정 제도 및 무죄사건 평정 제도 개관	4
가. 검사 복무평정 제도	4
나. 판사 복무평정 제도	6
다. 무죄사건 평정 제도	8
3. 검토의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질 평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판사의 경우 「판사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라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 처리 건수, 종국율 등이 포함된 기준을 근무 평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평정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제한 없는 기소권의 행사는 피고인에게 오랜 수사와 재판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익뿐 아니라 검찰의 내·외부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① 공소제기 건수 대비 유죄판결 선고건수의 비율, ② 사건 처리 건수 및 ③ 사건 처리 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생략)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u>자질</u>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u>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u> -----.
<신설>	1. <u>공소제기 건수 대비 유죄판결 선고건수의 비율</u>
<신설>	2. <u>사건 처리 건수</u>
<신설>	3. <u>사건 처리 기간</u>
③ 법무부장관은 <u>제1항의</u>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 <u>제1항 및 제2항의-</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검사·판사의 복무평정 제도 및 무죄사건 평정 제도 개관

가. 검사 복무평정 제도

현행 제35조의2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평정하여 그 결과를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제3항). 평정기준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자질’의 평정 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검사의 복무평정과 관련한 세부 평정 항목은 같은 조 제4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동 규칙 제4조²⁾에 따르면,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①인권옹호·청렴성, ②적시성·추진력, ③합리성·균형감·성실성, ④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및 ⑤리더십·조직운영 등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함.

1)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인권옹호·청렴성
2. 적시성·추진력
3. 합리성·균형감·성실성
4.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5. 리더십·조직운영

아울러, 동 규칙 제5조제2항3)은 복무평정자가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사 복무평정 제도 현황(「검사복무평정규칙」)]

구 분	주 요 내 용
평정대상 (제2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⁴⁾ 를 제외한 검사(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평 정 자 (제3조)	소속 상급자
평정항목 (제4조)	①인권옹호·청렴성, ②적시성·추진력, ③합리성·균형감·성실성, ④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⑤ 리더십·조직운영
평정방법 (제5조 및 제5조의2)	▲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의 경우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해당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평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하여야 함 ▲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평정시기 (제6조)	연 2회(상·하반기)
다면평가 (제6조의2)	▲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평가자로 구성된 다면평가 실시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검찰청·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3)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4)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과와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나. 판사 복무평정 제도

「법원조직법」 제44조의2⁵⁾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를 평정하여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제3항). 평정기준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자질’ 평정의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에도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검찰청법」상 ‘검사 복무평정’의 경우와 달리 ‘판사 복무평정’은 「법원조직법」이 직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판사에 대한 세부 평정사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동 규칙

-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 5)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6)에 따르면, 근무성적 등 평정은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함.

아울러, 동 규칙 제5조제1항7)은 근무성적 평정 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제2항에 명시된 각 항목에 더하여 실질처리건수 및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판사 복무평정 제도 현황(「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

구 분	주 요 내 용
평정대상 (제2조)	판사(평정기간 중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평 정 자 (제3조)	[별표]에서 정하는 평정자 예시) 각급 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 소속 고등법원장 각급 법원 판사 -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 /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평정사항 (제4조)	▲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함 ▲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평정을 금함
평정방법 (제5조)	▲ <u>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u> ▲ <u>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u> ▲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평정시기 (제6조)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

- 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대법원규칙)」 제4조(평정사항) ①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대법원규칙)」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다. 무죄사건 평정 제도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8)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검사 및 결재자의 과오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사 인사에 반영하는 ‘무죄사건 평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무죄사건 평정 제도’는 앞서 살펴본 ‘검사 복무평정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검찰청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르면 무죄사건 평정 결과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증거판단 잘못, 의율착오, 공소권행사의 부적정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및 인권침해 등 적법절차 미준수가 발생한 경우 검사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평정하게 됨.⁹⁾

위 평정의 결과 검사의 과오 정도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3점까지(0.5점 단위 6단계) 별점이 부여되며, 여러 건의 과오로 인하여 합산된 별점이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징계·경고·주의 등의 조치¹⁰⁾가 가능함.

8)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9)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10)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4조 (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②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다만, 비위가 직무상 과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안의 성격상 아래 제1호~제3호 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사무감사에 의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2과에 상시사무감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2. <경고>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
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참고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무죄사건 평정 결과를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총 평정건수 38,240건의 10.6%인 4,043건은 수사 미진·법리오해나 공소유지 소홀과 같이 수사검사·공판검사의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평정되었고, 나머지 89.4%에 해당하는 34,197건은 법원과의 견해차이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의 과오는 없었던 것으로 평정되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무죄사건 평정 현황]

(단위: 건, %)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사과오							
			계	수사검사 과오						공판검사 과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 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홀
2019년	8,028	7,131	897	438	382	0	8	0	64	5
2020년	7,647	6,871	776	332	319	0	10	0	113	2
2021년	7,319	6,414	905	449	361	0	34	0	60	1
2022년	7,827	7,069	758	335	319	0	32	0	71	1
2023년	7,419	6,712	707	419	232	0	4	0	49	3
합 계 (비 율)	38,240 (100.0)	34,197 (89.4)	4,043 (10.6)	1,973	1,613	0	88	0	357	12

* 자료: 법무부

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3.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① 공소제기 건수 대비 유죄판결 선고건수의 비율과 ② 사건 처리 건수 및 ③ 사건 처리 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앞서 살펴본 대로 판사의 경우 평정기준에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법원조직법」이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규칙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은 세부 근무성적 평정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검사의 경우에도 공소제기 대비 유죄판결비율, 사건 처리 건수, 사건 처리 기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를 평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판사 및 검사의 근무평정 관련 법·제도적 근거의 체계균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특히, 공소제기 건수 대비 유죄판결 선고건수의 비율을 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검사 기소로 장기간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¹¹⁾ ②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

11)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심 판결 기준 전체 선고인원 대비 0.8%~1.0% 수준인 5,000여명이 매년 무죄를 선고받고 있고, 2023년에는 1심 판결 선고인원 611,612명 중 0.92%인 5,621명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검찰의 공소제기 후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매일경제, “檢 ‘묻지마 기소’에 2심까지 무죄 3823건”, 2025. 2. 23. 등

를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바,¹²⁾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¹³⁾ ③ 검찰이 현재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을 근거로 운영하는 “무죄사건 평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¹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① 공소제기 건수 대비 유죄판결 선고건수의 비율을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른바 ‘객관의무’¹⁵⁾에 따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 전체 1심 선고인원 대비 무죄 선고인원 및 무죄율]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선고인원	686,830	649,231	579,302	587,676	611,612
무죄 선고인원	5,648	5,277	5,723	5,495	5,621
무죄율	0.82	0.81	0.99	0.94	0.92

* 주: 1. 무죄율 = 1심 무죄 선고인원 ÷ 1심 전체 선고인원(약식명령 포함)

2. 무죄 선고인원은 검찰처분인원 기준(법원병합 미만영)이며, 재심 및 재정신청사건의 무죄는 제외함.

3. 위 자료는 1심 선고 기준이며, 확정판결 기준이 아님.

* 자료: 법무부

1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매일경제, “檢, 무죄에도 끝까지 대법원行 … 국내기업 골병, 외국기업은 韓기피”, 2025. 2. 23.

14) 매일경제, “檢 항소 남발해도 승승장구 … ‘무죄평가제’ 있으나 마나”, 2025. 2. 23.

15) 검사의 객관의무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객관적 직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순히 당사자라는 입장을 초월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함.(이준보·이완규,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박영사, 2017. p. 251.) 현행법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도출되며, 대법원(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과 헌법재판소(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7 전원재판부 결정)도 직무상 의무로서 인정하고 있음.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야 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근무 성적 평정 기준에 유죄판결 비율을 반영하도록 명시할 경우 검사가 복무평정 및 향후 인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검사가 자신의 복무평정 관리 차원에서 유죄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기소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 직무행사의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 심사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실현’이라는 가치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② 사건 처리 건수 및 ③ 사건 처리 기간을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 내 근무부서(형사부, 공판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에 따라 처리 사건의 규모가 상이하고, 각 사건의 유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그 처리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근무성적 평정이 각 검사의 실질적인 실적과 역량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근무부서 및 담당 사건의 성격 등에 좌우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48
